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 사 부

결 정



상대방 즉시항고 대안

3/10

사 건 2014카합42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신 청 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KEC노동조합

구미시 공단동 149

대표자 위원장 공국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휘연

피 신 청 인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KEC지회

구미시 공단동 149

대표자 지회장 김성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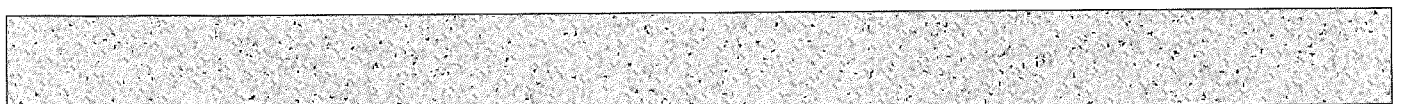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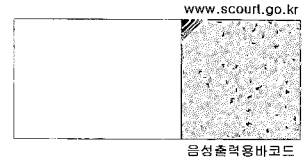
담당변호사 장석우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다수인을 모아두고 그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말, 글, 인쇄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신청인을 지칭하여 '어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한다. 피신청인이 위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매 1회 위반시마다 신청인에게 3,000,000원씩을 지급한다(신청서 신청취지란 기재 '3,000,000만 원'은 옳기로 보인다).

이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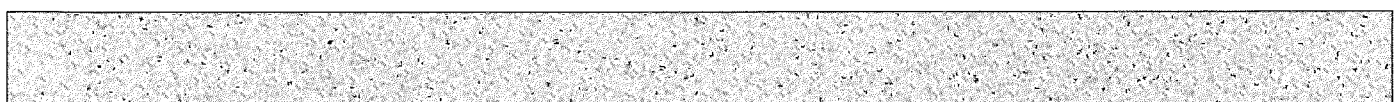
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은 주식회사 케이이씨(이하 '케이이씨'라 한다)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이고, 피신청인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구미지부 중 케이이씨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지회이다.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개정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한도제(이른바 타임오프제)의 도입으로 유급노조전임자의 숫자가 줄어들 것이 예상되자, 피신청인은 2010. 3.경부터 케이이씨를 상대로 노조전임자 수의 유지 등을 목적으로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피신청인은 위 노조전임자 안전을 포함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갱신 등을 목적으로 간헐적으로 파업을 하다가 2010. 6. 21.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는 등 쟁의행위를 해왔고, 2010. 7. 1. 이후에는 위 특별단체교섭은 임금 등에 관한 단체교섭 종료 후에 별도로 논의하겠다고면서 임금 등에 관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왔다.

다. 피신청인은 단체교섭 요구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0. 10. 21.부터 2010. 11.





3.까지 케이이씨의 1공장을 점거하였고, 이 때 조합원들 중 일부는 케이이씨의 경비원 등을 폭행하고, 생산설비 등의 기물을 파손하기도 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010. 11. 3. 케이이씨와 사이에 단체교섭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후 공장점거를 해제하고, 2011. 5. 25. 파업을 철회하였으며, 케이이씨도 2011. 6. 13. 직장폐쇄를 철회하였다. 한편 피신청인의 일부 조합원들은 2011. 4.경 피신청인에서 탈퇴하여, 2011. 7. 1. 신청인을 설립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2012. 6.경부터 신청인을 지칭하여 '어용노조가 좋다면 남으라 아니면 금속으로 오라', '노조파괴 드러났다, 어용노조 해산하라', '회사가 어용노조에 지원한 보상금 5억, 지원비 2억 밝혀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케이이씨 건물 내·외에 게시하고, 신청인의 사무실을 향하여 스피커를 틀어놓으면서 케이이씨 내·외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

바. 이에 신청인은 2013. 2. 27.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피신청인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을 신청하였고(이 법원 2013카합10호), 이 법원은 2013.

8.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청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다.

■ 신청취지

전국금속노동조합, 피신청인은 별지 제1, 2목록 각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위반행위 1회 1일당 금 3,000,000원을 지급하라. 전국금속노동조합, 피신청인은 주식회사 케이이씨의 구미공장 건물 내외에 설치된 '어용노조'의 문구가 들어가 있는 현수막을 철거하라.

■ 주문

1. 전국금속노동조합, 피신청인은 별지 제1목록 기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집행관은 제1항 기재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전국금속노동조합, 피신청인은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를 한 각 1일당 각 1,000,000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4. 전국금속노동조합, 피신청인은 구미시 공단동 149 지상에 위치한 주식회사 케이이씨의



구미공장 건물 내·외에 설치된 '어용노조'의 문구가 들어가 있는 현수막을 철거하라.
5. 신청인의 전국금속노동조합, 피신청인에 대한 각 나머지 신청과 주식회사 케이이씨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사. 피신청인은 2012. 2. 15.부터 현재까지 자신이 발행한 소식지 기타 인쇄물에 신청인을 지칭하여 '어용노조'라는 문구를 사용한 글을 게재하거나 이러한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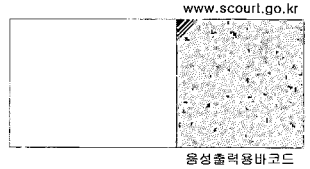
가. 신청인 주장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공연히 '어용노조'라고 표현함으로써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을 상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나. 판단

1)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인 처분이므로, 이러한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의 승패의 예상,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25. 2005다11626 판결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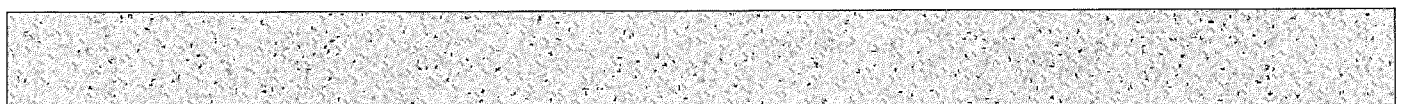
또한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나, 위와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도 타인의 명예 또는 신용이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한계를 가진다(헌법 제21조 제4항). 따라서 신청인은 노동조합으로서 자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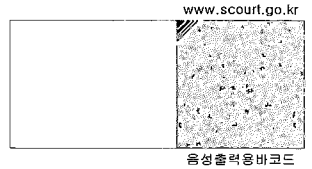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타인에 대하여 그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피신청인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에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민사상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즉 사람의 품성,德行,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은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 뿐만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을 것인바,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98다31356 판결,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소명사실 및 이 사건 기록,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신청인은 2011년 당시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에 있는 피신청인에서 탈퇴하여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별도로 구성된 기업별 단위노조인 점, ② 피신청인은 2010. 7. 1.부터 수차례에 걸쳐 케이이씨에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2011. 3. 31.부터는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개정에 관한 단체교섭도 함께 요구하였는데, 케이이씨는 2011. 7. 1. 신청인이 설립되었다는 이유로 교섭대표자의 교체 또





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이행 등을 요구하면서 피신청인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피신청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합1584호로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하여 '케이씨씨는 피신청인의 단체교섭 청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하라'는 결정을 받은 점(소을 제9호증), ③ 케이씨씨의 직원이 2011. 2.경 작성한 노무전략시나리오와 인력구조조정로드맵에는 조합원들의 기존 노동조합 탈퇴 및 친 기업 성향 노동조합 설립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소을 제4, 5, 6호증), ④ 케이씨씨의 직원인 이신희, 이정기, 이상혁, 이덕영이 노동조합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5. 2. 1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신청인 소속 노조원들의 전면 파업으로 구미공장 운영이 어렵게 되자 기존 조합 탈퇴, 친 기업 성향 노조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장폐쇄 대응방안, 인력구조조정로드맵 등을 계획하고, 파업자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여 복귀 사원의 피신청인 탈퇴를 강요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 개입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모두 위 판결에서 언급한 친 기업 성향 노조는 신청인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⑥ 신청인이 이 법원 2013카합10호로 피신청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사건에서도 '소식지, 인터넷 블로그 등에 어용노조, 충견노조라는 글귀를 게시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피신청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을 지칭하여 '어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치 않고, 이는 피신청인의 일정한 견해 표명으로도 볼 여지가 있어 명백히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더욱이 이러한 표현 행위를 사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 될 가능성이 높아 쉽사리 허용될 수 없고, 설령 명예훼손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



더라도 이는 본안소송이나 형사재판에서 최종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전에 가처분으로써 이를 금지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3.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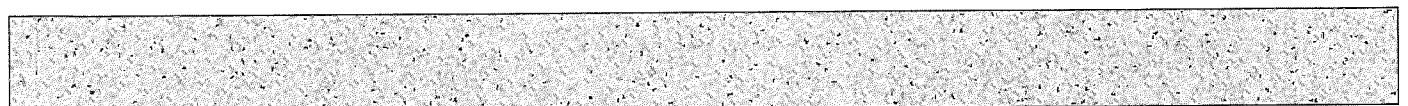
재판장 판사 권순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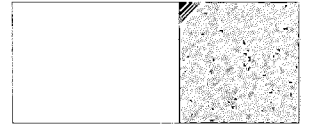


판사 박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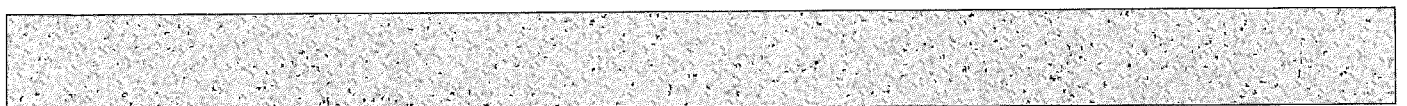
판사 봉지수





제1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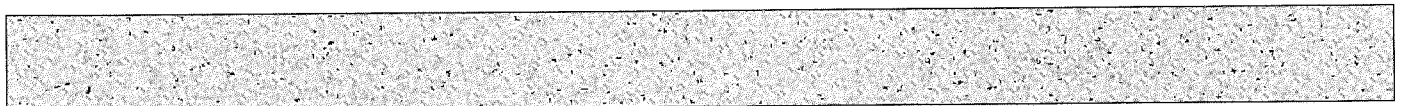
1. 구미시 공단동 149에 위치한 신청인 조합사무실의 출입구를 기준으로 측정하였을 때의 그 소음측정치가 식사시간(07:00 ~ 08:30, 12:00 ~ 13:20, 17:00 ~ 17:40)에는 80dB을, 주간(07:00 ~ 18:00) 중 위 식사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70dB을 각 초과하는 확성기(스피커 포함)를 사용하는 행위
2. 구미시 공단동 149 지상에 위치한 케이이씨의 구미공장 건물 내·외에 신청인을 지칭하여 '어용노조'라는 글귀가 새겨진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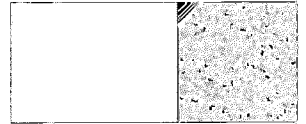




제2 목록

1. 구미시 공단동 149에 위치한 신청인 조합사무실의 출입구를 기준으로 측정하였을 때의 그 소음측정치가 주간(07:00 ~ 18:00)에는 65dB를, 야간(22:00 ~ 05:00)에는 60dB를 각 초과하는 확성기(스피커 포함)를 사용하는 행위
2. 구미시 공단동 149 지상에 위치한 케이이씨의 구미공장 건물 내·외에 신청인 조합을 지칭하여 '충견노조'라는 글귀가 새겨진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나 소식지·홍보지·트위터·페이스북·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를 통하여 '어용노조', '충견노조'라는 글귀를 게시·배포하는 행위
3. 구미시 공단동 149 지상에 위치한 케이이씨의 구미공장 내·외에서 열리는 집회에서 신청인 조합을 지칭하여 '어용노조', '충견노조'라는 발언을 하거나 선동하는 행위. 끝.





정본입니다.

2015.03.0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법원주사 정상길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